

광주, 대한민국 미래로!

제 규정 개정[안]

2020. 6.



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
제 규정 개정(안) 신 · 구 대조표

1. 인사규정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18조(근로계약 종료 등) ②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6조(징계사유)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원을 징계 할 수 있다.</p>	<p>제18조(근로계약 종료 등) <u>9.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</u></p> <p>제26조(징계사유) <u>9. 운전면허 정지 40일 이상이 1년에 2회 이상인 경우</u></p>	<p>2019년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에 따른 신설</p> <p>인사규정 제18조 삭제에 따른 세부기준 신설</p>

3. 운영규정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13조(이용자 준수사항 및 차량이용 제한)</p> <p>③제2항의 차량 이용제한 기한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당일 접수장소를 5회 변경한 자 : 7일</p>	<p>제13조(이용자 준수사항 및 차량이용 제한)</p> <p>③제2항의 차량 이용제한 기한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삭제</p> <p>9. 차량이 배차된 후 취소한 자 : 10분간 접수 불가</p>	<p>신규 관제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삭제 잦은 취소 제재에 따른 신설</p>

4. 자문위원회규정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5조(구성 및 임기) ②위원은 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 ③위원장은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⑤위원 중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임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구성 및 임기)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위원은 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 ④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원장과 市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 ⑤센터의 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⑥위원 중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임할 수 있다.</p>	<p>신설 ②항 신설에 따라 ③항으로 변경 ②항 신설에 따라 ④항으로 변경 및 당연직 범위 개정 ②항 신설에 따라 ⑤항으로 변경 ②항 신설에 따라 ⑥항으로 변경</p>
<p>제6조(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6조(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)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 지명이 없었을 경우는 다시 호선한다.</p>	<p>개정</p>
<p>제9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회의일시, 참석위원,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위원장과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하고 차기회의 때 전차회의록을 제시하여야 한다.</p>	<p>개정</p>
<p>제10조(수당) 원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수당) 센터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개정</p>